

무배당 세이프라이프플랜기업복지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세이프라이프플랜기업복지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7년 12월 15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세이프라이프플랜기업복지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명칭	
주보험	무배당 세이프라이프플랜기업복지보험
종속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배우자형)
	무배당 재해장해특약(본인형, 배우자형)
	무배당 재해장해특약Ⅱ(본인형, 배우자형)
	무배당 교통재해사망특약(본인형, 배우자형)
	무배당 교통재해장해특약(본인형, 배우자형)
	무배당 질병사망특약(본인형, 배우자형)
	무배당 산업재해사망특약
	무배당 산업재해장해특약
	무배당 암진단특약(본인형, 배우자형)
	무배당 갑상선암진단특약(본인형, 배우자형)
	무배당 암사망특약(본인형, 배우자형)
	무배당 암치료특약(본인형, 배우자형)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본인형, 배우자형)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본인형, 배우자형)
	무배당 수술특약(본인형, 배우자형)
	무배당 고도재해장해특약(본인형, 배우자형)
	무배당 고도질병장해특약(본인형, 배우자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년만기	전기납	만 15세~80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가. 무배당 암진단특약(본인형, 배우자형)을 선택할 때 무배당 갑상선암진단특약(본인형, 배우자형)을 함께 추가한다.
- 나. 무배당 암진단특약(본인형, 배우자형)과 무배당 갑상선암진단특약(본인형, 배우자형)을 함께 제공할 때 무배당 갑상선암진단특약(본인형, 배우자형)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무배당 암진단특약(본인형, 배우자형)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이상 의무부가 하며, 최대 30%까지 부가 가능하다.
-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단체보험을 제공할 때, 피보험단체가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 갑상선암진단보장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가'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라. 무배당 재해장해특약(본인형, 배우자형)과 무배당 재해장해특약Ⅱ(본인형, 배우자형)는 동시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마. 무배당 재해장해특약Ⅱ(본인형, 배우자형)를 선택할 때 무배당 고도재해장해특약(본인형, 배우자형)을 함께 추가한다.

바. '마'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단체보험을 제공할 때, 피보험단체가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 고도재해장해특약(80%이상 재해장해 보장)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마'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나. 보험료의 수수

- (1)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성별·나이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피보험단체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평균보험요율 또는 평균나이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보험료(남자, 여자)를 적용할 수 있다.
 - (가) 평균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보험요율에 따라 각 피보험자별로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각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며, 평균나이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단체의 평균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 (나) '(가)'의 평균보험요율 또는 평균나이보험요율은 동일 보험년도 중에는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보험자수의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체의 변동에 따라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다) 계속하여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평균보험요율이 직전보험년도의 평균보험요율에 3% 이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직전 보험년도의 평균보험요율을 사용할 수 있다.
- (3) 동일한 피보험단체에 대하여 '(1)' 내지 '(2)'의 나이별 보험요율, 평균보험요율, 평균나이보험요율 중 1개 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내에서 할인을 한다.

가. 할인대상

동일 피보험단체의 환산연납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가 100 만원 이상인 계약으로서 회사가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나. 할인을

동일 피보험단체의 환산연납영업보험료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환산연납영업보험료	할인율
100만원 미만	0%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9%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3%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15%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7%
5,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19%
7,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1%
1억원 이상	25%

환산연납영업보험료의 계산은 납입할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에 K를 곱한 값으로 한다.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	------	------	----

K	12	4	2	1
---	----	---	---	---

다. 할인액 산출방법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 × 할인율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당월분 포함)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할인하며, 최대 6개월분(당월분 제외)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주계약 약관 제 28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외 보험료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대상단체, 피보험단체, 단체요율 적용 및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1) 대상단체

이 보험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가) 제 1 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제 2 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다) 제 3 종 단체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피보험단체

‘(1)’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써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이하 ‘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1)’의 ‘(나)’ 및 ‘(다)’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단체요율 적용

(가) ‘(1)’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 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가) ‘(1)’ 및 ‘(2)’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전달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나)’를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무배당 산업재해사망특약 및 무배당 산업재해장해특약의 대상단체 및 피보험단체에 관한 사항

(1) 대상단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기타의 단체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피보험단체

‘(1)’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써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이하 ‘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피보험단체의 위험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6단체로 한다.

제 1 종 단체	광업
제 2 종 단체	제조업
제 3 종 단체	건설업
제 4 종 단체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제 5 종 단체	운수·창고 및 통신업
제 6 종 단체	기타

라. 무배당 암치료특약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암수술을 보장함에 있어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암수술자금’지급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보험안내자료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한다.

(2) 회사는 암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을 보험안내자료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한다.

마. 보험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계약해지 등에 대하여 그 부담비율만큼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바. 피보험자의 변경 및 개별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계약(다만,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서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
- (2)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다.
- (3)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정산 또는 조정한다.

사. 피보험자 사망시 유족 안내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종업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은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유족(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한다.

아.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 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별첨 제1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2호)

보험계약 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3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 청약서의 서식